

2018년도 일반(협동) 감사 결과

2019. 1. 10.



광주과학기술원 감사부

2018년도 일반(협동)감사 결과

1. 개 요

가.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기간 : 2017. 10. ~ 2018. 9.(1년)
- 감사대상부서 : 행정행위를 추진하는 집행부서 중심으로 감사 실시

나.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2018. 11. 12(월) ~ 12. 14(금) (4주)
- 감 사 인 : 감사부장 외 6인(외부감사인 3인 포함)

2. 감사 결과

- 감사처분심의회(2019.1.7.) 개최를 통한 감사 결과 확정

가. 총괄 : 지적사항 14건, 처분요구 17건

지 적 건 수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
총 건수	신분상 조치 인원			
14건	8명	3건 (8명)	13건	1건

나. 신분상 제재 조치

지적사항	처분내역			
	조치양정	소속	직급	성명
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운영 및 관리 부적정	주의	가가팀	일반관리원	□□□
	주의	나나팀	책임행정원	■ ■ ■
채용시험의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	주의	다다팀	선임기술원	○○○
	주의	라라팀	책임행정원	● ● ●
취득주식 관리 및 회계결산 부적정	주의	마마팀	담당	◇◇◇
	주의	바바팀	책임행정원	◆ ◆ ◆
	주의	사사팀	행정원	△ △ △
	주의	아아팀	책임행정원	▶ ▶ ▶

3.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요약서

연번	관련부서	제목	주요지적내용	조치요구내용	처분요구
1	총무팀	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운영 및 관리 부적정	기혼자아파트 입주대상자는 “기혼자에 한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혼자를 선정하여 입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지침 별지2, 2. 직원 1~2 순위 내 경합 시 혼인 여부 삭제 개정 ▶ 관련자 주의 조치 	개선 주의
2	총무팀	채용시험의 보훈 가점부여 부적정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- 선발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원인사규칙 제 28조(채용시험의 가점) 1항에 단서 조항 신설 ▶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인원이 3명 이내일 경우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 ▶ 관련자 주의 조치 	개선 주의
3	총무팀	인장 관리 부적정	인감날일 신청을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하나 사무관리규칙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음 사용인감 활용부서는 관리의 사각지대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무관리 규칙을 시스템에 맞추어 개정하고 ▶ 사용인감 관리부서의 관리책임 한계를 규정에 추가 ▶ 연구관리팀 사용인감(중복 각인사용) 1개 회수 	개선
4	총무팀	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	09하 9523(올뉴소렌토)호 차량운행일지 미기록 사업부서 구입 및 임대차량 관리기준 미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GIST명의로의 소유 및 임대차량은 차량관리부서에 등록, 사업부서 관리위임 조항 신설, 책임한계 설정토록 규정 정비 	개선
5	총무팀	휴가(병가) 운영 부적정	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처리하여야 할 병가 전체 78%에 해당 - 전체 64건 110일중 연차휴가대상 50건 56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위임전결규칙 공통직무전결사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휴가 중 “병가”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의 협조 후 승인하도록 개선 ▶ 질병 치료를 위한 조퇴 및 결근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10조, 제11조, 제12조에 근거하여 개인의 연차 휴가에서 차감하여 운영 	개선
6	재무팀	법인카드 정산 부적정	법인카드 결재일 기준 7일전까지 정산토록 규정 - 총 2,206건, 767백만원 지연정산 - 기관신용도 하락 방지를 위해 선 결재 추진 - 감사기간 연체자 104명, 92백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법인카드 관리 철저, 기관에서 선결재를 추진하는 경우 카드정지 및 연체료등을 법인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안내하고 관리에 철저 	개선
7	재무팀	보증금 회계처리 부적정	법률 및 기준변경으로 폐지된 보증금을 비용처리 없이 자산으로 결산처리 - 전신전화가입권, 사서함사용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2018 회계결산에 반영 (비용 처리) 	개선

연번	관련부서	제목	주요지적내용	조치요구내용	처분요구
8	재무팀	특허관련 자산의 회계처리 부적정	특허권 명목가격 1원으로 자산 인식 - 회계기준 반영 취득원가로 인식	▶ 취득원가를 결산에 반영하도록 권고 ▶ 고정자산관리요령 개정 권고	권고
9	재무팀/ 기업경영 전략팀	취득주식 관리 및 회계결산 부적정	기술실시계약관련 주식의 취득지분에 대한 회계미 반영, 법인세 신고 시 보유주식 명세서 누락(200만원, 지분율20%)	▶ 2018 회계결산에 반영하고, 기술료 계약 등 관련 취득 주식 관리 일원화하는 관계 규정 제정 ▶ 관련자 주의 조치	개선 주의
10	시설 운영팀	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계획(안) 수립 시행 부적정	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미 이행 - 내진목표설정-내진성능평가-보강설계-시공 - 내진성능평가(27개동) 용역비 예산미확보	▶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기관장 보고 ▶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법령 이행 촉구	개선
11	교무팀	부학부(과)장 위임전결권 부여	하부조직 운영규칙에 의거 임명된 부학부(과)장의 직무 권한과 책임한계 규정 미비 - 부학과장 2명, 부학부장 6명	▶ 부학부(과)장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 추진	개선
12	교무팀	학칙 운영 부적정	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조에서 “교원의 자격 심사와 업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학칙으로 정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칙에 근거규정 미 제정 - 현재, 교원인사규정에서 인사규칙으로 위임	▶ 학칙에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규정 개정 추진	개선
13	학생팀	학생 출장비 지급제한 부적정	학생 여행지침에 국내출장비 제한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근거 없이 제한지급시행 - 550건 180백만원 중 72백만원 제한 지급	▶ 제한지급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▶ 국외출장비 제한 지급 시 사유서 및 학생 동의 절차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	개선
14	학생팀	학칙 위임규정 미 제정	학칙 제93조의 2(장애학생 지원)에 관한 규정을 개정(2015.10.29.)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, “세부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.”고 하였음에도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. - 현재 재학 중인 장애인 총2명 재학(대학원)	▶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추진	개선